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1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6월 13일

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를 농업인상담소로 변경하여 현재 통용되는 명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 명칭변경(안 제15조, 제16조)
 - 농민상담소 → 농업인상담소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수년전부터 「농민」 이 「농업인」 으로 통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며, 또한 경상북도 대부분 시군에서 농업인상담소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명칭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